

부 령

●국토교통부령 제59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3항”을 “법 제10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10조제3항제1호”를 “법 제10조제5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10조제3항제3호”를 “법 제10조제5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0조제3항제5호”를 “법 제10조제5항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 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단서 중 “다른”을 “등록기준 대수 이상을 보유한 다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표 3 제1호에 따른 등록기준 대수 이상을 보유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등록기준 대수를 초과하는 자동차를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충청남도 내에 주 사무소가 있는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양도할 것

2. 제1호 외의 시·도의 경우: 동일한 시·도 내에 주사무소가 있는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양도할 것
별표 3 제1호의 비고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 대수를 조정할 수 있다.
별표 3 제2호의 비고 제1호다목 및 라목 중 “이상”을 각각 “이상(임대차계약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로서 그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시·군에 임차할 수 있는 운송부대시설 중 점검·정비시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로 맞닿은 시·군안의 점검·정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7 제6호의2 및 제10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법 제10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가. 관할구역에서의 주사무소 이전과 영업소, 정류소, 그 밖의 운송부대시설의 명칭·규모 및 위치의 변경	1건에 2,000원
나. 자동차의 대차 및 폐차로 인한 자동차의 변경	1대 기본 30,000원에 자동차 추가 1대당 10,000원씩을 합산한 금액
10의2. 법 제21조제10항에 따라 운행기록증을 발부 받으려는 자	1건에 100원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앞 쪽)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서
 [] 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 기간	즉시
신고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생년 월일	
	③ 주 소	(전화:)	
④ 사업의 종류	(운영형태:)		
⑤ 변경연월일			
⑥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⑦ 변경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또는 제6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 토 교통 부 장 관
 시 · 도 지 사
 시 · 도 ○○운송사업조합장
 시 · 도 자동차대여사업조합장
] 귀하

※ 첨부서류

1. 신·구 사업계획대비표(관련 운송사업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운행계통별 운행시간이 변경된 경우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2.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변동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3.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운송부대시설 등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변동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4. 관련 사업자 간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관련 운송사업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운행계통별 운행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5. 예약소의 도면(자동차대여사업 예약소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6. 주차 대수, 사용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 주차장 사용확인서, 주차비 납입증명서 또는 주차장 사용계약서(자동차대여사업 예약소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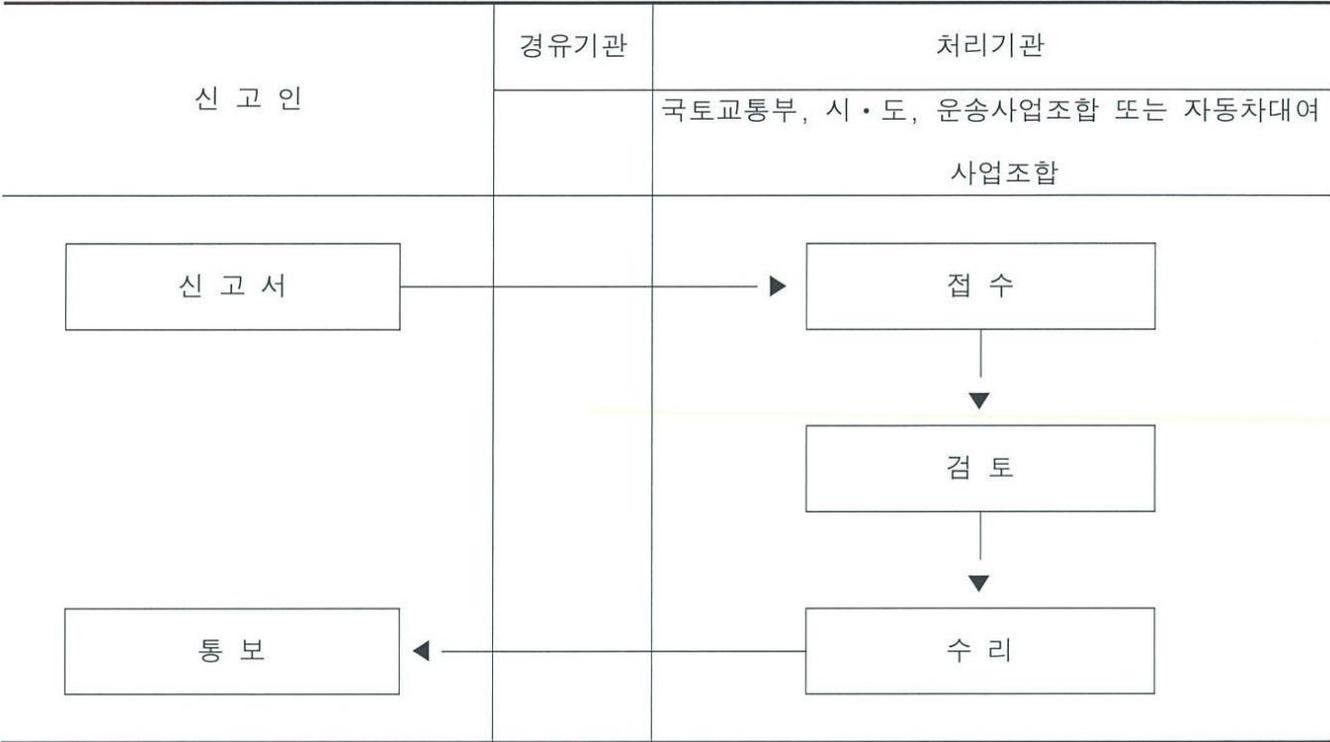
수수료
증차: 기본 5,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운행시간: 1,400원
대폐차: 1대 기본 30,000원에 자동차 추가 1대당 10,000원
기타: 2,000원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서식]

운행정보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	--	------	--	------	----

신청인	상호	대표자(성명/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신고내용	운행목적 : []통근 []통학 []관광 기타()	자동차 등록번호
	운행경로	운행일시
	운전자명(버스운전자격증번호)	기타 필요사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5제2항에 따라 운행기록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귀하

수수료

100원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수 리	➔	발 부
신청인		처리기관 (운수사업조합)		처리기관 (운수사업조합)		처리기관 (운수사업조합)		처리기관 (운수사업조합)

210mm×297mm[일반용지 54g/m²]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록기준 대수 이상을 보유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등록기준 대수를 초과하는 자동차를 양도하려는 경우 동일한 시·도 내에 주사무소가 있는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만 양도하도록 했으나,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남도 내에 주사무소가 있는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전세버스운송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로서 그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시·군에 임차할 수 있는 운송부대시설 중 점검·정비시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로 맞닿은 시·군 안에 있는 점검·정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 대한 수수료 기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국무총리훈령

●국무총리훈령 제734호

금융규제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9년 1월 30일

국무총리 ㉠

금융규제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금융규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금융위원회의 사전심의 등) ① 금융위원회는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또는 기존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두는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이하 “금융위원회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금융행정지도를 하려는 내용 및 그 사유(기존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유효기간 연장의 사유를 포함한다)
2. 제9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경우 그 내용 및 해당 금융행정지도에 반영한 결과
3. 제9조 단서에 따라 공고 및 의견청취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한 경우 그 사유
4. 해당 금융행정지도와 관련된 법령등이 있는 경우 그 법령등의 내용
5. 해당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이 법령등 또는 이미 공개된 금융정책 등의 내용에 상충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
6. 제13조에 따른 금융행정지도의 유효기간
7. 해당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명시적 금융규제로 전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

② 금융위원회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